

1. 의결주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으로 형식승인이나 예비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측정기기 중 센서형 간이측정기의 적정 관리를 위한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환경분야 측정·분석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등의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 시행일(’22.8.18)에 맞춰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대행하는 측정기기검사기관 지정기준 신설(제10조)
- 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및 측정분석정보시스템 정보입력 의무 미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100만원 이하)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제17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를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분야별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도검사(精度檢査) 분야 검사기관
2. 검정(檢定) 분야 검사기관
3.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도검사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별도의 지정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

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 검사하거나 검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해당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같다**”를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②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2호나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실험기기에 대해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13조의3제2항제2호, 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별표 1**”을 각각 “**별표 1의2**”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제2호,**”를 “**제2호, 제2호의3,**”으로, “**제4호의2**”를 “**제4호의2, 제4호의4**”로,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를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1호의2·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법 제9조의3에 따른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
별표 1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는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 분야별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제10조제1항 관련)

1. 정도검사(精度檢査) 분야

가. 자동차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교정용 표준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이산화탄소) 각 1대 나) 측정기기 영점(零點)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 1대 다) 전압·전류 측정기 3대 라) 자동기록장치 2대 마) 내전압시험기(누설전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1대 바) 전압변환기 3대 사) 흡입량 측정장치 3조 아) 교정용 표준지(20%, 30%, 40%, 50%) 각 1대 자) 검정용 자동차 1대(운행차 배출가스 원격측정기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만 해당) 차) 절연저항시험기 2조 카) 온도변환시험기(-20~40℃ 범위 내에서 온도 자동조절이 가능하여야 하고, 온도기록지가 포함되어야 하며, 내부 크기가 1.5m×1.5m×1.5m 이상이어야 한다) 1대

		타) 회전수측정기(tachometer) 1대 파) 광학측정기 1대
2) 제작차 배출가스 측정기기	기술직 6명(그 중 3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측정기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자)에 따른 검정용 자동차는 제외한다) 나) 건식가스미터(적산유량측정장치) 1대 다) 기체유량 교정장치 1대 라) 차압계(정확도 $\pm 0.25\%$) 2대 마) 압력펌프(압력변환 가능한 것) 1대 바) 기준압력계(manometer) 1대 사) 풍동시험장치(안지름 100mm 이상인 것) 1대 아) 기준 피토관(pitot tube, 계수 0.95~1.00) 1대 자) 기준온도계 1대 차) 순간유량계(정확도 $\pm 0.25\%$, 유량에 따라 변환이 가능한 것) 1대 카) 전자저울 2대 타) 입자개수 검증장치(입자분류장치, 입자전위차계, 입자개수 측정기) 각 1대 파) 유량측정시스템(정확도 $\pm 2\%$이내) 1대 하) 가스디바이더(정확도$\pm 0.5\%$) 1대 이상 (이동식 배출가스 측정장치와 그 부속기기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만 해당)

나. 대기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대기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일산화탄소·총탄화수소 및 산소)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배출가스 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교정용 표준가스 성분별 각 1대 다) 교정용 가스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영점(零點)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 1대 마)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바) 자동기록장치 3대 사) 수소이온농도계(pH계), 전도계 및 절연저항계 각 1대 아) 유량교정장치 1대
2) 굴뚝배출가스(이산화황·질소산화물·염화수소·불화수소·암모니아·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메탄·산소 및 먼지) 자동측정기·유속자동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측정기기 영점(零點)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 1대 나) 자동기록계 3대 다)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라) 역전류검출기(ocilloscope) 1대 마) 표준가스 정화장치 1대 바) 입자계수기 1대 사) 표준전류·전압 공급장치(직류·교류) 각 1대 아) 반사율측정기 자) 표준습식가스 유량계 1대 차) 수소이온농도계(pH계) 및 전도계 각 1대 카) 전자저울 2대

		타) 자외선 · 가시광선분광광도계 1대 파) 이온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하) 굴뚝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성분별 각 1대 거) 굴뚝배출가스 유속 자동측정기 1대 너) 실험분석실(습식분석장비 · 장치 보유) 더)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채취장치 1대 러) 증류수제조장치 1대 머)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1대 버) 배출가스 유량측정기 교정시스템(시험단면 30cm×30cm 이상, 최대 유속 15% 이상) 1대
3) 대기연속자동(이산화황 · 일산화탄소 · 질소산화물 · 오존 및 먼지) 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대기오염 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교정용 표준가스 성분별 각 1대 다) 교정용 가스 희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라) 측정기기 영점(零點)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 1대 마)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바) 자동기록장치 3대 사) 오존교정기 1대 아) 대용량 공기채취기, 입자계수기, 베타선(β-Ray)검출기, 주파수인가장치 및 연속가변저항기 각 1대 자) 증류수제조장치 1대 차) 수소이온농도계(pH계) · 전도계 및 절연

		저항계 각 1대 카) 전자저울 1대 타) 표준입자 발생장치 1대 파) 유량교정장치 1대 하) 가변저항기 1대
4) 굴뚝시료 채취장치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기체유량 측정시스템(직관부가 확보되어 있고, 시스템 정확도는 0.3% 이내여야 함) 1대 나) 유량계교정장치 1대 다) 기준유량계 2대 라) 디지털압력계 2대 마) 압력펌프 1대 바) 기압계 1대 사) 전압·전류 측정기(0.01mV, 0.001mV 이하 측정 가능) 1대 아) 초시계(0.01초 이하 측정 가능) 1대 자)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차) 풍동장치(피토관 시험용) 1대 카) 온도계(최소 눈금 0.1℃ 이하) 1대 타) 미세눈금자(micrometer, 최소 눈금 2 μ m 이하) 1대 파) 온도교정장치 1대 하) 절연저항계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거) 가변저항기 1대 너) 굴뚝시료(입자상 및 가스상 물질) 채취장치 1대

		더) 기준 피토관(계수 0.95~1.00) 1대 러) 항온항습시설[온도 (23±1)℃, 상대습도 5 5% 이하]
--	--	--

다. 수질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 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나) 전자저울(200g 이상, 0.1mg 이하로 측정할 수 있 어야 함) 1대 다) 기준온도계(0~5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어야 함) 1대 라) 직류전압발생장치(±1V 범위의 전압을 0. 5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함) 1대 마)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Ω 이상인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1mV 이내의 정도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함) 1대 바) 항온수조(10~100℃ 범위의 온도를 ±1℃ 이 내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 어야 함) 1대 사)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1대 아) 절연저항검사장치(1kV 이상의 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함) 1대 자) 내전압검사장치(1kV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함) 1대

		차)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Omega$ 및 $500M\Omega$ 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함) 1대 카) 신호기록장치 1대 타) 시료보관용 항온항습장치 1대 파) 항온항습시설[온도 (23 ± 1) $^{\circ}C$, 상대습도 5% 이하] 하) 회로시험기 1대 거) 고압증기멸균기 1대 너) 증류수제조장치 1대
2)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 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가)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나) 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3)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연속 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가)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나)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4) 총 질소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가)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나) 총 질소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5) 총 인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가)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나) 총 인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6)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가)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나) 총 유기탄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7)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가)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나)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8)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가)에 따른 용존산소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나) 부유물질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1대

라. 소음·진동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소음계	기술직 2명	가) 소음계(기준장비) 1대 나)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 31.5Hz~16kHz) 1대 다) 표준음발생기 (1) 200~500Hz 1대 (2) 1,000Hz 1대 주 : (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 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 마) 음발생장치: 50~8,000Hz 범위의 모든 주 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

		파수 이상)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기기 1대 바) 음주파수 응답분석장치: 50~8,000Hz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사) 기록장치 1대 아) 무향실(125Hz~8kHz 범위에서 역2승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pm 1\text{dB}$ 이내) 1실 또는 음압교정용 마이크로폰(microphone) 결합장치(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 가능) 1대
2) 진동레벨계	기술직 2명	가) 다기능 표준진동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1Hz ~90Hz) 1대 나) 표준진동발생기 6.3~90Hz 1대 다) 표준진동픽업 1개 라) 진동가진장치: 6.3~9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에서 정현진동(正弦振動)을 발생하는 기기 1대 마) 진동주파수 응답분석장치: 6.3~90Hz 범위의 모든 진동(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바) 기록장치 1대 사) 무향실(125Hz~8kHz 범위에서 역2승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pm 1\text{dB}$ 이내) 1실 또는 음압교정용마이크로폰 결합장치(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 가능) 1대
--	--	--

마. 토양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저장시설 누출측정기	기술직 5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저장시설 액상부 측정기(시간당 0.4ℓ 이하의 누출량을 감지하여 계량화할 수 있어야 함) 및 그 부속기기 1대 나) 저장시설 기상부 측정기(9.8Pa 이하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야 함) 및 그 부속기기 1대 다) 측정기 환경시험용 온도 및 습도 가변시험시설 1대 라) 측정기기 시험시설(직경 240cm, 길이 400cm 이상의 액체를 저장할 수 있는 스테인레스 재질의 원통형 저장시설로서 저장시설 안의 액체 및 압력의 변화를 연속적으로 측정·기록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함) 1대 마) 전자저울(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함) 1대 바)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pm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1대 사) 절연저항측정기 1대

		아) 내전압측정기 1대 자) 자동기록장치 1대
--	--	------------------------------

바. 먹는물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탁도 연속자동측정기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 함) 1대 다) 직류전압 발생장치($\pm 1V$ 범위의 전압을 0.001mV 이내로 발생시킬 수 있어야 함) 1대 라) 직류전압계(내부저항이 $3G\Omega$ 이상의 것으로 0~1V 범위의 전압을 $\pm 0.001mV$ 이내 정도로 계측할 수 있어야 함) 1대 마) 전압조정기(정격전압이 $\pm 10\%$ 범위에서 전압을 연속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1대 바) 절연저항측정기(1kV 이상의 전압을 가하여 2000M Ω 이상 측정할 수 있어야 함) 1대 사) 내전압측정기(1kV 이상의 교류전압을 1분 이상 가할 수 있어야 함) 1대 아) 신호기록장치 1대 자) 시료보관용 항온장치 1대 차) 증류수(순수)제조장치 1대 카) 항온수조[5~100℃ 범위의 온도를 $\pm 1^\circ C$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교반장치(攪拌裝置: 섞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함] 1대

		타) 가변저항기(내부저항을 1MΩ 및 500MΩ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함) 1대 파) 항온항습시설[온도 (23±1)℃, 상대습도 5~5% 이하]
2)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기술직 3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1)에 따른 탁도 연속자동 측정기의 검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1)의 가)에 따른 탁도 연속자동측정기는 제외한다) 나)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 1대 다) 기준온도계(-20~90℃의 계측이 가능하고 한 눈금으로 0.1℃ 이하까지 읽을 수 있어야 함) 1대

사. 실내공기질 분야

정도검사 대상 측정기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휘발성 유기화합물·석면 및 총 부유세균) 시료채취장치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시료채취 장치(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위상차현미경 1대 다) 전자현미경 1대 라) 유량측정장치(100mL/min 이상 측정 가능하고 유량을 계속 더하여 측정할 수 있어야 함) 5대 마) 온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 1대 바) 순간유량 측정장치(바누방울 측정방법) 1대 사) 압력측정장치(5개 채널 이상) 1대 아) 습도측정장치(10개 채널 이상) 1대 자) 배양기(세균) 1대 차) 시료포집펌프 1대 카) 전자저울(0.001mg 이하 측정 가능한 것) 1대 타)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대 파)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하) 자동기록장치 3대

		거) 절연저항계측정기 각 1대 너) 압력펌프 1대 더) 미세먼지(PM10) 공기포집기 3대 러) 가변저항기 2대 머) 차압계(정확도 $\pm 0.25\%$) 2대 버) 무균시험실 서) 장비검사실
2) 실내공간오염물질(포름알데히드·미세먼지·일산화탄소·이산화탄소·오존·이산화질소 및 라돈) 자동측정기	기술직 4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실내공간오염물질 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1대 다) 고성능 액체 크로마토그래프 1대 라) 열 탈착기 1대 마) 전자저울(0.0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1대 바) 온도 및 전압 발생장치 각 1대 사) 교정용 표준가스(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이산화탄소) 각 1대 아) 교정용 가스희석장치(일산화탄소·이산화질소·이산화탄소) 각 1대 자) 측정기기 영점(零點) 교정을 위한 표준가스 발생장치 1대 차) 전압변환기 및 내전압측정기 각 1대 카) 자동기록장치 3대 타) 절연저항계측정기 1대 파) 시료포집펌프 1대 하) 가변저항기 2대

		거) 온도시험장비($-20^{\circ}\text{C} \sim 40^{\circ}\text{C}$, 크기 $1.5\text{m} \times 1.5\text{m} \times 1.5\text{m}$ 이상) 1대 너) 직류전압 공급장치 1대 더) 압력펌프 1대 러) 미세먼지(PM10) 공기포집기 3대 머) 차압계(정확도 $\pm 0.25\%$) 2대 버) 장비검사실
--	--	---

2. 검정(檢定) 분야

검정 대상 교정용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가. 측정기기 교정가스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가스표준물질 제조장치 1대 나) 가스분석기(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또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등) 2식 다) 기체유량계($100 \sim 500\text{mL}/\text{min}$) 1대 라) 수분분석기 1대
나. 측정기기 교정액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이온크로마토그래프(전기전도도검출기 포함) 1대 나) 자외선·가시광선 분광분석기($190 \sim 1,000\text{nm}$) 1대 다) 초순수(超純水) 제조장치(수질 $10\text{M}\Omega$ 이상) 1대 라) 고압증기멸균기(120°C 에서 가열할 수 있는 것) 1대 마) 배양기($(20 \pm 1)^{\circ}\text{C}$ 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1대 바) 항온수조(10°C 에서 150°C 까지 범위내의 온도를 $\pm 1^{\circ}\text{C}$ 이내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1대
다. 매연측정기 교정용 표준지 · 표준필터 및 매연포집용 여과지	기술직 4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검정대상 환경측정기기 표준 검정기기 나) 검정대상 환경측정기기 표준 교정용품

3.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가. 대기 분야 간이측정기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오존)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시험체임버 1대 나) 대기오염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성분별 각 1대 다) 교정용 표준가스 성분별 각 1대 라) 교정용 가스 회석장치 성분별 각 1대 마) 측정기기 영점(零點) 교정을 위한 표준가 스 발생장치 1대 바) 오존교정기 1대
나. 수질 분야 간이측정기 (용존산소, 수소이온농도)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용존산소 및 수소이온농도 연속자동측정기 (기준장비) 각 1대 나) 전자저울(200g 이상, 0.1mg 이하로 측정할 수 있는 것) 1대 다) 항온수조(10~50℃ 범위의 온도를 $\pm 1^{\circ}\text{C}$ 이내의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1대 라) 증류수제조장치 1대 마) 항온항습시설[온도 ($23\pm 1^{\circ}\text{C}$), 상대습도 5 5% 이하]
다. 먹는물 분야 간이측정기 (탁도, 잔류염소)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탁도 및 잔류염소 연속자동측정기(기준장비) 각 1대 나) 전자저울(최대 눈금 200g 이상, 측정단위 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1대 다) 증류수제조장치1대 라) 항온항습시설[온도 ($23\pm 1^{\circ}\text{C}$), 상대습도 5 5% 이하]

라. 소음 분야 측정기기	기술직 <u>2</u> 명(그 중 1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소음계(기준장비) 1대 나) 다기능 표준음발생기(중심주파수대역 : 31.5Hz~16kHz) 1대 다) 표준음발생기 (1) 200~500Hz 1대 (2) 1,000Hz 1대 주 : (1) 및 (2)의 기능이 모두 있는 기기 1대로 대체할 수 있다. 라) 표준콘덴서형 마이크로폰 1대 마) 음발생 장치: 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 주파수 이상)에서 순음 또는 대역잡음을 발생시키는 기기 1대 바) 음주파수 응답분석장치: 50~8,000Hz 범위의 모든 음(최소한 1/3 옥타브대역 중심주파수 이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기 1대 사) 무향실(125Hz~8kHz 범위에서 역2승 법칙이 만족되어야 하며, 그 오차의 범위는 $\pm 1\text{dB}$ 이내) 1실 또는 음압 교정용마이크로폰(microphone) 결합장치 (50~8,000Hz 범위의 모든 주파수에서 결합 가능) 1대
마. 실내공기질 분야 측정기기(이산화탄소, 라돈)	기술직 3명(그 중 2명은 기능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가) 시험체임버(라돈 외 항목용) 1대 나) 시험체임버(라돈용) 1대 나) 이산화탄소 및 라돈 자동측정기(기준장비)

		각 1대 다) 교정용 표준가스(이산화탄소) 1대 라) 교정용 가스 회석장치(이산화탄소) 1대 마) 측정기기 영점(零點) 교정을 위한 표준 가스 발생장치 1대 바) 전자저울(0.001mg 이하까지 측정할 수 있는 것) 1대 사) 시험가스 공급 및 농도조절장치 1대
--	--	--

비고

1.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분야별, 환경 매체별 또는 대상 측정기기별로 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복수의 분야, 복수의 환경 매체 또는 복수의 측정기기에 대해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공통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검사기관은 정도검사, 검정 또는 성능인증을 위해 사용하는 측정기기에 대해 다른 검사기관에게 법 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측정기기를 보유한 검사기관이 해당 측정기기의 정도검사, 검정 또는 성능인증을 대행할 수 있는 유일한 검사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기술능력 기준상 기술직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환경측정분석사 자격을 취득한 자
 - 나. 관련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정도검사 등 관련 실무경력(검정 분야 검사기관의 경우 환경 측정·분석 관련 실무경력을 포함하며 이하 이 별표에서 “관련 실무경력”이라 한다)이 1년 이상인 자
 - 다. 관련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5. 기술능력 기준상 기능직은 관련 분야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비고 제4호 및 제5호에서 “관련 분야”란 환경, 화공, 화학, 토목, 공업화학 등 환경 관련 분야와 계측, 전기(통신 분야를 포함한다), 기계, 자동차 등 정밀계측 관련 분야를 말한다.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기준(제13조의3제3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
 - 가. 측정대행계약의 공고
 - 나. 측정대행계약의 적정성 검토 등 측정대행계약의 평가
 - 다. 측정대행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2. 측정대행계약관리와 관련된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을 갖추고 있을 것
 - 가.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의 절차 및 수행방법
 - 나. 기술인력의 준수사항 및 그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감독 방법
4.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적인 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측정기기를 수입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1호	50	70	100
나. 법 제9조제5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이나 수입신고의 표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2호	50	70	100
다. 법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예비형식승인제품이라는 내용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2호의2	50	70	100
라. 법 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간이측정기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	법 제35조제2항 제2호의3	50	70	100
마.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정도검사를 받지 않고 측정기기를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3호	50	70	100
바.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정을 받지 않은 교정용품을 공급 또는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	50	70	100

사. 법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체결 사실을 기한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의2	50	70	100
아. 법 제18조의2제5항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4호의3	50	70	100
자. 법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법 제35조제2항 제4호의4	50	70	100
차. 법 제23조를 위반하여 환경측정분석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5조제1항	300	300	300
카. 법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않거나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5호	50	70	100
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을 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6호	100	100	100
파. 법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35조제2항 제7호	50	70	100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3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후단 신설>	제10조(환경측정기기검사기관의 지정기준) ① ----- ----- ----- -----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야별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기술능력	1. 정도검사(精度檢査) 분야 검사기관
가. 정도검사(精度檢査) 검사기관	
1) 자동차 분야 : 6명 이상	
2) 대기 분야 : 5명 이상	
3) 수질 분야 : 5명 이상	
4) 소음·진동 분야 : 2명 이상	
5) 토양 분야 : 5명 이상	
6) 먹는물 분야 : 3명 이상	
7) 실내공기질 분야 : 4명 이상	
나. 검정(檢定) 검사기관 : 4	

명 이상

2. 검사하려는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검사하거나 검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2. 검정(檢定) 분야 검사기관

3.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정도검사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별도의 지정 없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측정기기 및 교정용품을 정도검사하거나 검정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시설 및 장비에 대해 해당 시설 및 장비를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3.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장비 및 실험기기는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보유한 자(다른 검사기관은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12조(측정대행업의 등록기준)

① -----

----- 같으며, 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2. 시설 및 장비

가. 실험실(소음·진동 분야는 제외한다.)

나. 측정하려는 항목을 시험·검사할 수 있는 장비 및 실험기기

<삭 제>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능력, 실험실, 장비 및 실험기기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생략)

②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략)

2. 별표 1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별표 1 제3호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리 업무규정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측정대행계약관

② 측정대행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제1항제2호나목의 장비 및 실험기기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실험기기에 대해 이를 보유한 자(다른 측정대행업자는 제외한다)와 공동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장비 및 실험기기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13조의3(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의2 -----

3. 별표 1의2 -----

③ -----

별표 1의2-----

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 ⑧ (생략)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② (생략)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

----- 제2호, 제2호의3,
--- 제4호의2, 제4호의4 -----

----- 법 제28조제2항제
1호·제1호의2·제2호 -----

② (현행과 같음)

③ -----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 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 1의4. (생 략) <u><신 설></u> 2. ~ 8. (생 략)	----- -----. 1. ~ 1의4. (현행과 같음) <u>1의5. 법 제9조의3에 따른 간이 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u> 2. ~ 8.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연 락 처	(044) 201 - 6671